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1-0011	등록일자	2021-03-30
규제명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보건위생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08-07
등록사유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17-08-07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1-0010	등록일자	2021-03-30
규제명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보건위생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08-07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08-07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1년 하반기 등록규제 점검 및 정비(기획예산실-13636(2021.9.13.))에 따른 삭제 (관리번호2000-0035 와 중복되어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1-0005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사용자의 변상책임		
처리기관	문화예술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2009-04-13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09-04-1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용자의 변상책임)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문화시설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태만 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1-0004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사용허가 등의 취소		
처리기관	문화예술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4-12-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4-12-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사용허가 등의 취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4.12.31>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2.31>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1-0001		등록일자	2021-03-29
규제명		흡연실의 설치 등			
처리기관		건강증진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보건위생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05-0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05-0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흡연실 설치 기준			
규제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개정 2017.5.8>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5.8>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0-0003	등록일자	2020-04-24
규제명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처리기관	경제지원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자원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등록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5-12-30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5-12-30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20-0002	등록일자	2020-04-24
규제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2-2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규제내용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 <개정 2017.11.13> 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2개의 조문(제14조, 제15조)이 하나의 규제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분리 별도로 등록함.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7-0005	등록일자	2017-12-29
규제명	통장 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09-18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09-1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통장 위촉의 공정성 및 적합성 강화		
규제내용	제2조(통장위·해촉 및 반장의 등록)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총점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승낙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3.4.3, 2005.5.28, 2015.7.13, 2015.11.30, 2017.9.18>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7-0002		등록일자		2017-12-29	
규제명		사용허가					
처리기관		체육진흥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1호 - 허가	
사무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09-04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09-04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					
규제내용		<p>제6조(사용허가) ①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또한 같다.</p> <p>② 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97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판매소 휴·폐업 신고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신고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7-10-0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7-10-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종량제 봉투 판매소의 관리		
규제내용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94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보관시설 설치 및 보관용기 기준 설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4-01-06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4-01-0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 운반 및 효율적인 관리			
규제내용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8.7>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0.4.24.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1개의 조문 아래의 조항이 각각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조문을 기준으로 1개의 규제로 등록 정비(제12조제5항 추가)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93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06-1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06-1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규제내용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92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06-1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06-1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기준 제시		
규제내용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89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체육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관	체육진흥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13-07-0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3-07-0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체육시설의 합리적 이용		
규제내용	제3조(사용허가)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83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처리기관	기획예산실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7-08-06
규제시행 /폐지일	2007-08-06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7-08-0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주민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의 범위를 정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규제내용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81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9-04-1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규제내용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80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9-04-1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신고.허가 대상 광고물을 관리함에 있어 연장신고 없이 처리할 경우 휴업, 폐업 등의 광고물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위해 연장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실시코자 함		
규제내용	제5조(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79	등록일자	2014-09-30
규제명	수수료 미반환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1-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6-01-0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미반환함으로 반복되는 허가 신고사항을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마련과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규제내용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구청장이 발급하는 세외수입고지서 또는 수입 증지 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78	등록일자	2018-12-31
규제명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11-13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11-1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기준		
규제내용	<p>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7.11.13. 조례 개정 시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 반영하여 제4조제3항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72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업체 선정 기준		
처리기관	토지정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명주소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02-2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0-02-2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규제내용	<p>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개정 2010.2.23.>)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0.2.23.></p> <p>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개정 2010.2.23.></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71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유료화장실의 신고		
처리기관	환경보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신고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12-29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12-2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도모		
규제내용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7.12.29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내용 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69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비치		
처리기관	환경보전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2호 - 지도(감독,권고)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7-12-29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7-12-2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중화장실의 규모, 시설 내역, 관리 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를 두어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규제내용	제5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7.12.29 전부개정에 따른 규제내용 수정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분리 등록 되어있던 규제조항(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을 1개의 조문으로 통합하여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66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처리기관	재무과	소관부처(청)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재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09-01-0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9-01-05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규제내용	<p>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p> <p>제44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도랑·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p>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p> <p>2021년 하반기 등록규제 점검 및 정비(기획예산실-13636(2021.9.13.))에 따른 수정 (조례 전부개정(2019.7.15.))에 따른 조항번호 수정 제39조 -> 제44조)</p>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62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소방방재청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3-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6-03-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및 사고 위험 해소		
규제내용	<p>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공동으로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61		등록일자		2017-12-29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소방방재청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특성	위임사무	법규공포일	2017-07-10	등록사유	강화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7-07-10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및 사고위험 해소					
규제내용		<p>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7.07.10 일부개정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범위 확대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60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소방방재청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3-31
등록사유	2006-03-31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06-03-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및 사고위험 해소		
규제내용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59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소방방재청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3-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6-03-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및 사고 위험 해소			
규제내용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58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및 관리					
처리기관		안전총괄과		소관부처(청)		소방방재청	
법적근거	상위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소방민방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3-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6-03-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최소화 및 사고 위험 해소					
규제내용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54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처리기관	경제지원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자원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1-03-3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1-03-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으로 전통상업 보존		
규제내용	<p>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p> <p>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p> <p>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53	등록일자	2014-09-29
규제명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처리기관	경제지원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자원부
법적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상공업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10-0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0-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규제내용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1.2.25. 행안부 등록규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통합등록(제14조의2->제14조)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45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사용자 설비의 임의처분			
처리기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노인복지법 제37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8-11-2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8-11-2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사용자 설비의 원상복구 및 임의처분			
규제내용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1.2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부터 7일 이내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법적근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을 조례 제13조로 변경(제3항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41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 자격			
처리기관		복지정책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11-1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0-11-1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신청시 거주지 제한			
규제내용		<p>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애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p> <p>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가족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7.13></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9.7.1.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37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금연구역의 지정			
처리기관		건강증진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보건위생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06-1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06-1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금연구역 지정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도모			
규제내용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9.11.1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11.11.> 3.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개정 2019.11.11.>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개정 2019.11.11.>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19. 11. 11.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규제내용 변경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32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단원 위촉 연령 제한		
처리기관	문화예술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13-03-18
등록사유	2013-03-18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13-03-1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조(단원의 자격) 예술단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으로, 예술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25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주차요금의 가산금		
처리기관	교통정책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1-0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9-01-05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규제내용	<p>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p> <p>②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2.2.25.,2007.3.5., 2009.1.5. ></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법적근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을 조례 제4조로 변경(제2항 표시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24		등록일자	2014-09-25
규제명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			
처리기관		교통정책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13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11-26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1-2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규제내용		<p>제10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개정 2010.2.23>)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거지 전용주차구역에 한한다.</p> <p>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법적근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을 조례 제10조로 변경(제1항 표시 삭제) 2020.7.6. 등록규제 변경 요청에 따라 규제명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에서 자격기준으로 변경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20	등록일자	2014-09-24
규제명	견인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처리기관	교통정책과	소관부처(청)	경찰청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교통법 제36조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훈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관리 규정 제6조	
	예규		
	고시등		
부문	경찰교통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1-10-20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1-10-20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견인대행업체의 자격조건에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규제내용	제6조(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행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내 주차대수 4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확보 2. 견인대행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 3.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표준화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법적근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견인대행법인등에 관한 관리 규정 제6조제1항을 규정 제6조로 변경(제1항 표시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13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등록취소		
처리기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7-10-0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7-10-0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0조(등록취소)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된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09	등록일자	2014-03-28
규제명	단원의 자격		
처리기관	문화예술과	소관부처(청)	여성가족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자치사무	법규 공포일	2003-06-28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3-06-2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p>제5조(단원의 자격) ① 합창단원은 인천광역시남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2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으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 발성코치는 성별, 연령, 지역제한을 받지 않는다.</p> <p>② 다른 지역 여성이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들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10.7]</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05	등록일자	2014-03-27
규제명	사용허가		
처리기관	문화예술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2009-04-13		존속기한
규제시행 /폐지일	2009-04-13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1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03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변상		
처리기관	시민공동체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04-30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0-04-30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20조(변상)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서관이 지정하는 유사 자료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 및 구·군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4-0002	등록일자	2014-03-27
규제명	독서회원의 자격상실		
처리기관	시민공동체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1-01-0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1-01-03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직권 취소 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가 해소 될 경우에는 재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 취소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재 가입 할 수 있다. 1. 본인이 회원 탈퇴를 희망한 경우 2. 도서를 분실 및 훼손하고 원상회복 조치 요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3-0016	등록일자	2013-06-03
규제명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처리기관	여성가족과	소관부처(청)	보건복지부
법적근거	상위법	아동복지법 제4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사회복지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12-31
등록사유	2009-12-31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09-12-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규제내용	제6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아동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3 상반기 규제 일제정비시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3-0012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금고지정 기준		
처리기관	세무1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회계법 제38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재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0-09-25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0-07-05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금고지정 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지정기준 <개정 2010.7.5.>) ①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2021년 하반기 등록규제 점검 및 정비(기획예산실-13636(2021.9.13.))에 따른 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3-0011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연령제한		
처리기관	감사실	소관부처(청)	안전행정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0-05-1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0-05-1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감사청구 주민의 수와 연령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3-0008	등록일자	2013-06-03
규제명	직원 및 소장 임용 자격 요건		
처리기관	시민공동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시행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0-05-1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3-05-3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8조(직원의 임용 <개정 2010.1.11.>) ① 직원은 소장, 팀장, 운영요원으로 구분한다. [본항신설 2010.1.11.], <개정 2015.11.30., 2018.2.26.> ②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1.>[제1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10.1.11.] ③ 소장은 최초 임용일 현재 만61세미만인 자로 하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1회 연임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전문개정 2007.3.26.]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10.1.11.]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29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통·반장 위촉 연령 제한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2-11-26
등록사유			완화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3-11-18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통 반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규제내용	<p>제5조(통·반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1.5., 2012.04.09.,2012.11.26.>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 망이 두텁고 지방자치 시대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 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2.15., 2012.04.09.,2012.11.26., 2013.11 .18.></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28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처리기관		경제지원과		소관부처(청)		산업통상자원부	
법적근거	상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에너지		유형		1호 - 허가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11-1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2-2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규제내용		제4조(허가요건)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19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2-2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등		
규제내용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인 이상)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2개의 조문(제14조, 제15조)이 하나의 규제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분리 별도로 등록함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05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12-31
등록사유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13-12-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규정		
규제내용	○ 특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격요건을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3-12-02일 규칙 개정으로 특별임용시험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명칭 변경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04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특수직급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0-12-31
등록사유	2010-12-31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2013-12-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특정업무수행에 적합한 공직자 채용		
규제내용	<p>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3-12-02일에 규칙 개정 2018-07-16일에 규칙 개정으로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조항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03	등록일자	2012-12-26
규제명	신규임용시험 연령 제한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2조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8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04-20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12-12-26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연령 규정		
규제내용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12-0001	등록일자	2015-11-18
규제명	임용 자격 기준		
처리기관	총무과	소관부처(청)	안전행정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시행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조례		
	규칙		
	훈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임용자격규정 제3조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15-11-16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88-05-0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공정한 신규인력 임용		
규제내용	<p>○ 지방별정직공무원등의 임용자격기준및 절차를 정함에 있어</p> <p>○ 특수업무에 합당한 자격자를 채용하기 위한 기준 마련</p> <p>제3조(임용자격기준)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11]과 같다.</p> <p>②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총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을 준용하거나 규정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21.2.25. 행안부 등록규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규제 재등록 및 법규명수정(남구→미추홀구)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9-0013	등록일자	2009-10-30
규제명	소매인의 지정 기준		
처리기관	경제지원과	소관부처(청)	기획재정부
법적근거	상위법	담배사업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재정경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9-10-30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9-11-0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효율적 추진		
규제내용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9.10.30 신설 2019.5.13. 조례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9-0001	등록일자	2009-03-31
규제명	허가신청의 제출서류		
처리기관	도시경관과	소관부처(청)	행정안전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지방행정	유형	3호 - 제출의무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1-0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6-01-0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규제내용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개정 2017. 11. 13.>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 8. 8., 2017. 11. 13.>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57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적용범위		
처리기관	세무2과	소관부처(청)	안전행정부
법적근거	상위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재정경제	유형	4호 - 기타(부담금징수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1-07-01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1-07-01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수수료 징수방법 제한		
규제내용	수수료 징수방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의 날인 또는 전자수입증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0.03.23 송파구 모델안 준수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55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임용구비서류		
처리기관	체육진흥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문화공보	유형	1호 - 확인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2-04-29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2-04-29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자격에 맞는 선수선발		
규제내용	적정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구비서류 징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임용)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자격을		
처리기간		구비서류	이력서 지원서 추천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남구→미추홀구, 제3조→제2조)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52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처리기관	교통정책과	소관부처(청)	국토교통부
법적근거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국토도시개발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8-01-18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9-01-1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도심 속 주차난 해소		
규제내용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개정 2009.1.5></p> <p>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리</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 사항(존치) 2010.03.22 개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49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가축사육 제한 지역 지정		
처리기관	환경보전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2006-09-27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2007-09-28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규제내용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1994.01.17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47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생활 및 대형 폐기물 배출방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4-01-17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4-01-17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폐기물 적정처리			
규제내용		<p>제7조(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5., 2015.12.30.></p> <p>1.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이때 50ℓ 이상 일반용 중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50ℓ는 13 kg 이하, 100ℓ는 25kg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를 0.25kg/ℓ)로 제한한다. <개정 2015.12.30., 2017.11.13.></p> <p>2. 대형폐기물은 배출한 폐기물 앞면에 구청장이 지정한 스티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p>○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p> <p>○ 2009.01.05 최종개정</p>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45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4-01-17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4-01-17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지정		
규제내용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과 같이 다수 주민의 옥외 공동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운반 장비의 성능에 맞추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3., 2009.1.5., 2017.11.13.> ②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 ○ 2009.01.05 최종개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42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봉투 판매소 지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7-10-0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7-10-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활한 봉투판매 및 주민편의 제공 ○ 규격봉투 판매소를 개설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신청서 징구 		
규제내용	<p>제3조(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 지정) ① 조례 제12조와 관련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2., 2017.8.7.></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후, 판매소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8.7.></p> <p>③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소의 신규지정은 기존 봉투판매소중에서 동별 5~10개소내외로 지정 운영해야한</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 ○ 2001.03.22 개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40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2호 - 행정질서별(허가취소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7-10-02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7-10-02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원활한 봉투판매 및 주민편의 제공		
규제내용	제7조(판매소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2017.8.7.>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8.7.>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 ○ 2007.11.05 개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36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배출방법의 세분류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금지(부작위)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7-10-02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7-10-02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폐기물적정처리		
규제내용	<p>생활폐기물의 배출기준</p> <p>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p> <p>제2조(배출방법의 세분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29, 20</p>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p>○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존치)</p> <p>○ 2007.11.05 최종개정</p> <p>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이중등록)</p>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35	등록일자	2000-03-21
규제명	음식물 배출자의 처리 방법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8-10-09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8-10-0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등을 정하여 감량화 및 수거 처리의 일원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 또는 구청장인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규제내용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7.>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0.3.21 행정규제위원회 의결사항 2020.4.24. 등록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법적근거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조례 제10조로 변경(제3항 표시 삭제)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30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쓰레기 봉투별 폐기물 종류 제한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4-01-17
등록사유	등록사유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4-01-17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폐기물 적정처리		
규제내용	○ 일반규격봉투, 사업장폐기물봉투, 공공용봉투에 당는 폐기물의 종류를 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용도 등)<개정 2018.12.31>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0.3.23 송파구 모델안 준수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2021.2.25. 행정안전부 등록규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법규명수정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000-0029	등록일자	2014-09-04
규제명	지정판매소에서 쓰레기 봉투 등의 직접구입		
처리기관	자원순환과	소관부처(청)	환경부
법적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환경	유형	1호 - 지정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4-01-17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 /폐지일	1994-01-17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폐기물 적정처리		
규제내용	○스티커는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 사업장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 또는 인터넷을 이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000.3.23 송파구 모델안 준수 ○ 개정 2008.3.28 2014년 등록규제 10% 감축계획 및 구.군 표준화작업을 통하여 비규제로 정비		
기타			

규 제 등 록 서

등록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992-0002	등록일자	1992-04-29
규제명	사격선수단 임용 자격 기준		
처리기관	체육진흥과	소관부처(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적근거	상위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제6조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	체육청소년	유형	3호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무 특성	위임사무	법규 공포일	1992-04-29
등록사유			등록사유
규제시행 /폐지일	1992-04-29	존속기한	
규제재경토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6조(임용자격) 단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5.>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0.7.5.> 2. 감독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0.7.5.> 3. 선수는 해당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원서 및 인천광역시 사격연맹회장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개정 2015.11.16.>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2010.11.5. 누락규제 등록		
기타			